

20. 스위스(Switzerland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46년(노령·유족기초연금), 1959년(장애기초연금), 1982년(직역노령·장애·유족연금), 2000년(사회보험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 및 강제직역연금제도

3. 적용대상

- 사회보험(기초연금)
 - 당연적용 : 스위스에서 거주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
 - 임의적용 :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인 스위스 당연적용 가입기간이 있고 현재 스위스, 유럽연합(EU) 및 유럽자유무역연합(EFTA) 국가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스위스 국민과 EU/EFTA 국가 국민
- 강제직역연금
 - 당연적용 : 한 사용자에게서 받는 연간 소득이 21,150 francs을 초과하는 근로자. 실업자는 장애 및 유족급여제도에 가입됨
 - 임의적용 : 당연가입 보험 대상이 아닌 봉급 근로자와 자영자

4.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사회보험(기초연금)
 - 총 소득의 4.2%(노령·유족연금)와 0.7%(장애연금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액 없음
 - 비근로 가입자는 자산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연간 392~19,600 francs(노령·유족연금) 및 65~3,250 francs(장애연금)의 보험료 납부
 - 강제직역연금
 -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, 24,675 francs부터 84,600 francs까지의 총 월소득의 3.5~9%
 - ※ 근로자 기여분을 부담하기 위한 사용자의 추가 임의납부 가능
- 자영자
 - 사회보험(기초연금)

- 56,400 francs 이상 소득에 대해, 총소득의 7.8%(노령·유족연금)와 1.4%(장애연금); 이보다 낮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험료 적용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액 없음
- 강제직역연금
 - 가입자의 연금기금에 따라 다양함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(기초연금)
 - 임금총액의 4.2%(노령·유족연금)와 0.7%(장애연금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상한액 없음
- 강제직역연금
 -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, 24,675 francs부터 84,600 francs까지의 총 월임금 총액의 3.5~9%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잔액 이상이어야 함. 근로자 기여분을 부담하기 위한 사용자의 추가 임의납부 가능

○ 정 부

- 사회보험(기초연금)
 - (경제상황에 따라) 연간 연방보조금으로 노령·유족급여 비용의 19.55% 및 장애급여 비용의 37.7~50% 부담(부가가치세 세입 일부와 카지노 이익 과세 세입 전액은 노령급여 재원으로 사용됨)
- 강제직역연금
 - 없음;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연금

- 노령기초연금(사회보험)
 - 65세(남자) 또는 64세(여자) 도달. 21세부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완전연금 수급
 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년 이상으로 65세(남자) 또는 64세(여자) 도달
 - 조기연금 : 정상수급연령 1~2년 이전에 수급 가능
 - 연기연금 : 70세(남자) 또는 69세(여자)까지 연기 가능
 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18세(학생이나 견습생인 경우 25세) 미만 자녀를 가진 65세(남자) 또는 64세(여자) 도달자
 - 상시간병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타인의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고 산재제도로부터 상시간병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

경우 지급

- 노령기초연금은 스위스 국민에게 해외 지급 가능하며, 국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연금(강제직역연금)
 - 65세(남자) 또는 64세(여자) 도달자
 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18세(학생 또는 견습생인 경우 25세) 미만 자녀를 가진 65세(남자) 또는 64세(여자) 도달자
 - 노령연금(강제직역연금)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지급 가능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기초연금(사회보험)
 - 40% 이상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. 21세부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완전연금 수급
 - 부분연금 : 40% 이상 장애로 판정되어야 함.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수급 가능
 - 특별연금 : 23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미만인 스위스 국민(또는 21세 이전부터 스위스에 거주 중인 사람)에게 지급
 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18세(학생이나 견습생인 경우 25세) 미만 자녀를 가진 장애연금 수급자
 - 상시간병보조금 : 가입자가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타인의 상시 간호를 필요로 하고 산재제도로부터 상시간병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시 중지되며 모든 상시간병보조금을 포함하여 동일한 금액의 노령기초연금으로 대체됨
 - 장애기초연금은 스위스 국민에게 해외 지급 가능하며, 국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연금(강제직역연금)
 - 40% 이상 장애로 판정된 경우 지급.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지급 가능
 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18세(학생이나 견습생인 경우 25세) 미만 자녀를 가진 장애연금 수급자
 - 장애연금(강제직역연금)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지급 가능

○ 유족연금

- 유족기초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한 가입자가 21세부터 매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완전연금 수급
 - 부분연금 : 사망자의 21세 이후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면 지급

- 수급가능유족 범위
 - i)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
 - ii) 사망한 자와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45세 이상의 미망인
 - iii)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1명 이상인 홀아비(또는 등록된 공적 파트너)
 - iv) 특정 조건하에 이혼한 배우자(또는 별거중인 공적 파트너)
 - v) 18세(학생이거나 견습생인 경우 25세) 미만 자녀
-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재혼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정지될 수 있음
- 유족기초연금은 스위스 국민에게 해외 지급 가능하며, 국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연금(강제직역연금)
 - 사망자는 사망 당시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발병 당시 연금수급자 또는 가입자이어야 함
 - 수급가능유족 범위
 - i)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(또는 등록된 공적 파트너)
 - ii) 사망한 자와 5년 이상의 혼인기간(또는 등록된 공적 파트너관계)을 유지한 45세 이상의 배우자(또는 등록된 공적 파트너)
 - iii) 자녀가 1명 이상이고 사망자와의 혼인기간(또는 등록된 공적 파트너관계)이 10년 이상이며 이혼수당을 받고 있는 이혼한 배우자(또는 별거중인 공적 파트너)
 - iv) 18세(학생이거나 견습생인 경우는 25세) 미만 자녀
 - 유족연금(강제직역연금)은 국적에 상관없이 해외 지급 가능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노령기초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연 평균소득이 42,300 francs 이하인 경우, 1년당 10,428 francs(정액)+가입자의 연소득x13/600 지급
 - 가입자의 연 평균소득이 42,300 francs을 초과한 경우, 1년당 14,664 francs(정액)+가입자의 연평균소득x8/600 지급
 - 교육 또는 보조금 형태의 수입 및 비근로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소득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이 가입자의 생애 연 평균소득 산정에 고려됨
 - 최저 노령기초연금액은 월 1,175 francs, 최고연금액은 월 2,350 francs. 부부의 연금 합산액이 노령기초연금 월 최고한도액의 150%(3,525 francs)를 초과할 수 없음
 - 부분연금 : 21세 이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1년당 완전연금액의 1/44씩 감액 지급

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수령하는 1년당 6.8%씩 감액 지급
- 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이후 연기기간에 따라 5.2~31.5% 증액 지급
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각 수급가능자녀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40% 지급. 최소 피부양자보조금은 월 470 francs이며 최대 피부양자보조금은 월 940 francs
- 상시간병보조금 : 상시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월 최저 노령기초연금액의 20~80% 지급
- 급여 조정 : 물가 및 임금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
- 노령연금(강제직역연금)
 - 연 연금액은 퇴직 시 개인계좌에 적립된 잔액의 6.8%
 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가입자가 받을 수 있었던 완전직역장애연금액의 20%가 각 수급가능 자녀에게 지급됨
 - 급여 조정 : 보험기관의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

○ 장애연금

- 장애기초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연 평균소득이 42,300 francs 이하인 경우, 1년당 10,428 francs(정액) + 가입자의 연소득 \times 13/600 지급
 - 가입자의 연 평균소득이 42,300 francs을 초과한 경우, 1년당 14,664 francs(정액) + 가입자의 연평균소득 \times 8/600 지급
 - 장애정도에 따라 완전연금(70% 이상 장애), 완전연금액의 75%(60~69% 장애), 완전연금액의 50%(50~59% 장애) 또는 완전연금액의 25%(40~49% 장애) 지급
 - 교육 또는 보조금 형태의 수입 및 비근로 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소득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이 가입자의 생애 연 평균소득 산정에 고려됨
 - 월 최저 완전장애기초연금액은 1,175 francs
 - 월 최대 완전장애기초연금액은 2,350 francs
 - 부분연금 :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 연령집단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에 기초하여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 지급
 - 피부양자보조금 : 각 수급가능자녀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40% 지급. 최소 피부양자보조금은 월 470 francs이며 최대 피부양자보조금은 월 940 francs
 - 상시간병보조금 : 간병 유형 및 가입자 연령에 기초하여 급여 지급
 - 급여 조정 : 물가 및 임금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
- 장애연금(강제직역연금)
 - 수급자가 장애 발생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로를 했을 경우 퇴직연령까지 적립했을 기금의 6.8%를 연 연금액으로 지급
 - 장애 정도에 따라 완전연금(70%이상 장애), 완전연금액의 75%(60~69% 장애),

- 완전연금액의 50%(50~59% 장애) 또는 완전연금액의 25%(40~49% 장애) 지급
- 피부양자보조금(아동연금) : 가입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완전직역장애연금액의 20%가 각 수급가능 자녀에게 지급됨
- 급여 조정 : 3년 이상 지급된 급여는 다음 연도 초에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되고, 그 후의 조정은 기초연금 조정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짐

○ 유족연금

- 유족기초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기초연금 :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을 획득한 노령 또는 장애기초연금액의 80% 지급. 월 최저 유족기초연금액은 940 francs, 월 최대 유족기초연금액은 1,880 francs
 - 부분배우자연금 :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일 연령집단의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에 기초하여 완전연금액의 일정 비율 지급
 - 고아기초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을 획득한 노령 또는 장애기초연금액의 40% 지급. 월 최저 고아연금액은 470 francs, 월 최대 고아연금액은 940 francs(완전고아인 경우 1,410 francs)
 - 급여 조정 : 물가와 임금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
- 유족연금(강제직역연금)
 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사망 당시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할 수 있었던 완전직역장애연금의 60% 지급
 - 고아연금 :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사망 당시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할 수 있었던 완전직역장애연금의 20% 지급
 - 급여 조정 : 3년 이상 지급된 급여는 다음 연도 초에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되고, 그 이후의 조정은 기초연금 조정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짐

7. 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보험(기초연금)

- 연방 내무부(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)
 - www.edi.admin.ch
 - 전반적 감독
- 연방 사회보험청(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)
 - www.bsv.admin.ch
 - 법령의 시행 감독
- 주, 산업, 연방 보상금고(decentralized network of cantonal, industrial, federal compensation funds)
 - 보험료 징수 및 기록, 연금 지급

- 중앙보상사무소(Central Compensation Office)
 - www.zas.admin.ch
 -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

○ 강제직역연금

-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. 직역연금 감독을 위한 고등위원회(High Commission for the Supervision of Occupational Pensions, www.oak-bv.admin.ch)에서 지방정부 감독
- 약 1,648개의 등록된 직역연금기관(Occupational Pension Institutes)이 제도 운영

<2018년 ISSA 자료>